

보도시점 (지 면) 3. 29.(수) 조간
(인터넷) 3. 28.(화) 12:00

수·위탁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공포(3.28)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근거 등 법률로 규정
- 분쟁조정 신청에 민사상 시효중단 효력 및 조정서에 민사상 집행력 부여
- 법 위반기업의 자발적 피해 구제시 행정처분 면제, 벌점 경감 등 유인책(인센티브) 부여

수·위탁거래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분쟁조정협의회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2023년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8일 공포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은 수·위탁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소송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등 피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법 위반기업의 자발적 피해구제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분쟁조정협의회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학·경제학·경영학 전공 교수, 판사·검사,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중소기업부장관이 위촉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 위원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중소기업부장관이 지명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게 하였으며,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또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② 분쟁조정협의회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권 등 부여

분쟁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분쟁조정협의회에 부여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참여 위원 및 분쟁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조정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분쟁당사자는 조정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에 따른 효력 강화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에 민사상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채권 소멸시효 도과 등을 방지하였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분쟁조정 협의회의 조정서의 정본에는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조정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되고 그 합의된 내용이 이행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개선요구,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이하 “개선요구등”이라 한다) 등을 받지 않게 된다.

④ 자발적 피해구제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 부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사 대상기업이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에는 개선요구등을 아니할 수 있으며,

개선요구등을 하기 전에 피해 구제한 경우에는 벌점을 경감하여 부과하는 등 자발적 피해구제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이로 인해 법 위반기업은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담당 부서	상생협력정책관 불공정거래개선과	책임자	과 장	노형석 (044-204-7940)
		담당자	사무관	문창식 (044-204-779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개 정 전	개 정 후
<p>제20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p> <p>① (생략)</p> <p>② 재단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p>1. ~ 6. (생략)</p> <p>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영</p> <p>8. ~ 9.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p> <p>① ~ ⑥ (생략)</p> <p>⑦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u></p> <p><신 설></p>	<p>제20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p> <p>① (좌동)</p> <p>② 재단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p>1. ~ 6. (좌동)</p> <p>7. -----</p> <p>-----<u>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위탁하는 사업 및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영</u></p> <p>8. ~ 9. (좌동)</p> <p>③ ~ ⑤ (좌동)</p> <p>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p> <p>① ~ ⑥ (좌동)</p> <p>⑦ <삭제></p> <p>제28조의2(벌점 등) ①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u></p> <p>②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업에 부과된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u></p>

개정 전	개정 후
<p><신 설></p> <p>제28조의2(교육명령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7조제7항에 따라 별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별점기준에 따라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용은 그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신 설></p>	<p>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제28조의3(별점 등의 감면)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 대상기업이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과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이하 “개선요구등”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개선요구등을 아니할 수 있다.</p> <p>② 중소기업부장관은 개선요구등을 하기 전에 조사 대상기업이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별점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p> <p>제28조의4(교육명령 등) ① ----- -- 제28조의2제1항----- -----대통령령----- -----개선요구등----- ----- ----- ② (좌 동)</p> <p>제28조의5①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분쟁조정협의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③ 정부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개정 전	개정 후
<p><신 설></p>	<p>②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 사건에 대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u></p> <p>③ <u>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④ <u>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민사상 시효 중단이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⑤ <u>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u></p> <p>⑥ <u>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서를 작성한 때</u> 2. <u>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u> <p>⑦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성립되고 그 합의된 내용이 이행된 경우에는 개선요구등을 하지 아니한다.</u></p> <p><u>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①</u> <u>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u></p> <p>② <u>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u></p> <p>③ <u>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u> 2. <u>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u>

개정 전	개정 후
<p>제40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조정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u>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p>	<p>경우</p> <p>④ <u>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u></p> <p>1. <u>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협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u></p> <p>2. <u>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u></p> <p>⑤ <u>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여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서를 작성한다.</u></p> <p>⑥ <u>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해당 사건을 스스로 협의하고 조정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u></p> <p>⑦ <u>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조정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u></p> <p>⑧ <u>제7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⑨ <u>분쟁당사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분쟁조정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⑩ <u>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신청이 각하되거나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와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서의 이행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⑪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조정협회에 분쟁조정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p> <p>제40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p>

개정 전	개정 후
<p>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u><신 설></u></p> <p><u><신 설></u></p> <p>제43조(과태료) ①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생략) ⑤ (생략)</p>	<p>----- 1. <u>조정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위원</u> 2. <u>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u></p> <p>제43조(과태료) ① ~③ (좌동) ④ ----- ----- 1. (좌동) 2. <u>제28조의4</u>----- ----- 3. (좌동) ⑤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p>
<p><u><신 설></u></p>	<p><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u><신 설></u></p>	<p><u>제2조(벌점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40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p>
<p><u><신 설></u></p>	<p><u>제3조(시효 중단의 효력 및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9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8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p>
<p><u><신 설></u></p>	<p><u>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27조제1항제6호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으로 한다.</u> <u>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31조제1항제6호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으로 한다.</u></p>